

수신 : 참여연대 김현정 간사

발신 : 안상수 의원실

제목 : 국회법 제40조2 '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조항 시행에 관한 공개질의서 답변

1. 귀 단체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.

2. 아래와 같이 답변서를 보냅니다.

- 아 래 -

1) 변호사직 휴업할 계획

- 한나라당내 및 지역구 등에서 무료법률상담·무료변론 등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평년간 변호사직을 유지하다가 금년내 휴업할 계획임. 다만 현재도 외부로부터의 일반사건의 수임·고문 등 영리행위는 일체 하지 않고 있음. (소송 수행중인 사건은 한건도 없으며 모든 법률고문직에서도 이미 사퇴했음)

3) 겸직금지의 기본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

- 법사위원의 지위가 법원·검찰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까운 친지·친구들의 법률상담을 해주고 소액의 고문료를 받는 것은 겸직금지 기본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국회의장에게 그 허용여부를 질의하고자 함. (변호사 출신 의원이 법사위원회 지원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임)